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범위 현실화

문필주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 서론
-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 검토
- 과세환경 변화
- 과세범위 개편의 필요성 검토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범위 현실화

문필주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계장비 활용 현황과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형성되어 왔음**
 - 1964년 중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의 시작이었음
 - 이후 국가의 경제개발과 수출 성장에 따라 기계장비의 보급·활용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현황과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도 확대되었음
-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임**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 중장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이동성, ② 대형이라는 특징을 가짐
-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무인화 기계장비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산업용 로봇과 무인화 기계장비는 그 가능상 현행 기계장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음**
 - 산업용 로봇을 원자재·부품 하역 등 물류에 활용하게 되면, 지게차나 기중기와 같은 기존의 기계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는 조종석이 없으므로, “자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범위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과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수정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함**
 -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이동성, 대형의 특성을 갖는 중장비 중심의 과세대상 설정 기준을 이동성,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 관점에서, 산업용 로봇과 무인화 기계장비가 기존의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AGV나 직교로봇과 같이, 현행 기계장비 요건을 일부 수정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산업용 로봇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접근
 - 무인화 기계장비와 관련하여, 현행의 “자주식” 요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01

서론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변화하는 과세환경을 포섭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취득세 과세연혁을 보면,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계장비도 이 시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음
- 1964년 중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의 시작이었으며¹⁾, 당시 정부가 경제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세제를 정비하면서 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²⁾
- 경제개발 재원 조달이라는 당시의 과세대상 확대 이유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음
- 197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중기”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로 확대되었음³⁾
- 1997년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건설기계에서 기계장비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들어왔음⁴⁾
- 현행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대 상황과 과세환경이 반영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장비에 해당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수립에 따라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차관 등으로 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하면서, 국가재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관리를 위해 중기관리법이 제정되었음⁵⁾
- 1964년부터 199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⁶⁾은 항만과 공항의 화물 이동량을 증가시켰을 것이고, 항만과 공항에서의 기계장비 활용도도 높아졌을 것임
- 기술 발전에 따라 현행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 범위와 변화한 과세환경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있음

1) (구)지방세법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2)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 60년사」 제2권 주제사,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pp.21-23.

3) (구)지방세법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4) (구)지방세법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5)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건설기계관리, 2010.11.22.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179 (방문일자: 2024.09.23.)

6) 국가기록원, 경제 · 산업 > 수출품.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export.do> (방문일자: 2024.09.23.)

○ 기존의 기계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과 무인화 기계장비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산업용 로봇과 무인화 기계장비의 장점은 그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현재의 기계장비 사용 영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현시점에도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 범위와 변화한 과세환경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 할수록 현실과 법에서 정하는 과세범위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음

○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별적 대응 방안과 중장비 중심의 과세대상 설정 기준을 큰 틀에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됨

02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 검토

○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임

- 「지방세법」 제6조 제8호는 기계장비를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함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여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것을 말함(〈표 1 참고〉)⁷⁾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것을 말함(〈표 1 참고〉)⁸⁾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각각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부분이 포함됨을 알 수 있음

-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에 포함되어 있음 (〈표 1〉 참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31호에서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의 범위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의 범위가 구조적으로 더 넓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의 범위가 넓으므로, 내용 중복을 피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부분은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삭제하자는 견해도 있음⁹⁾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별 범위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의 범위가 넓음

- 동일한 기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

9) 김태호, 「미등록 기계장비의 취득세신고누락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p.43.

- 굴착기나 로더는 자체중량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
- 덤프트럭은 적재용량이 12t 이상이어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
- 지게차는 타이어식이고 조종석이 있어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
- 기중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이어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
- 콘크리트벳팅플랜트와 콘크리트피니셔는 원동기를 가져야 하며, 쇄석기는 이동식이어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
- 동일한 기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가 더 좁음
- 자체중량 4t 미만의 로더,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궤도(레일)식 기중기, 선박으로 등록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서 제외함
- 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별 각 내용을 보면, 톤, 자체중량, 조종석 또는 원동기 유무, 레일식, 견인식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표 1〉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는 전반적으로 ① 이동성, ② 대형이라는 특징을 갖는 중장비로 구성되어 있음

- 열거하고 있는 기계장비 다수는 무한궤도, 타이어식, 자주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타이어식이나 궤도식일 것을 요하지 않더라도 이동 가능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동성이 있음
- 콘크리트벳팅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이동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노면측정장비는 소형 장비도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노면측정장비는 "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하므로, 차량에 부착되어 이동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대형'의 의미는 상대적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는 톤, 자체중량, 조종석 또는 원동기 유무, 레일식, 견인식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아 소형 건설기계도 포함하지만, 소형 건설기계도 아래 '3. 과세환경 변화' 부분에서 살펴볼 AGV(Automated Guided Vehicle)와 같은 산업용 로봇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형 기계장비라 할 수 있음

<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기계장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비	
	해당 여부 ¹⁾	범위	해당 여부 ¹⁾	범위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슬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롤러	○	①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콘크리트 배팅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콘크리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아스팔트 피니셔	<input type="radio"/>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input type="radio"/>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 살포기	<input type="radio"/>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input type="radio"/>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살포기	<input type="radio"/>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input type="radio"/>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쇄석기	<input type="radio"/>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input type="radio"/>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공기압축기	<input type="radio"/>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input type="radio"/>	공기吐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천공기	<input type="radio"/>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input type="radio"/>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항타 및 항발기	<input type="radio"/>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input type="radio"/>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기	<input type="radio"/>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input type="radio"/>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준설선	<input type="radio"/>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input type="radio"/>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타워크레인	<input type="radio"/>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input type="radio"/>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특수건설기계	<input type="radio"/>	위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input checked="" type="radio"/>	
노면측정장비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도로보수트럭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노면파쇄기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선별기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그 밖의 건설기계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위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 해당여부: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미함

03

과세환경 변화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무인화 기계장비도 등장하기 시작함

- 산업용 로봇은 기계장비와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기존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의 등장 배경에는 건설산업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장비 생산 기업들의 노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신,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 영향이 큼

■ 산업용 로봇의 기계장비 대체

○ 로봇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 장치라는 점에서 현행 기계장비와 그간 구분되어 왔음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로봇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로봇이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며 의도된 작업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축을 따라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동 메커니즘을 말함¹⁰⁾
 -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현재 상태와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의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¹¹⁾
- 국제표준화기구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자동으로 제어되며,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다목적 조작체계로, 3개 이상의 축으로 조정가능한 것으로서 고정되거나 이동 가능한 형태로 산업 자동화 응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¹²⁾

○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 또는 창고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은 자동화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임

-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 설비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10) ISO 8373:2012(en), Robots and robotic devices — Vocabulary, Section 2.6. 'Robot', <https://www.iso.org/obp/ui/#iso:std:iso:8373:ed-2:v1:en> (방문일자: 2024. 09. 13.).

11) ISO 8373:2012(en), Robots and robotic devices — Vocabulary, Section 2.2. 'Autonomy', <https://www.iso.org/obp/ui/#iso:std:iso:8373:ed-2:v1:en> (방문일자: 2024. 09. 13.).

12) ISO 8373:2012(en), Robots and robotic devices — Vocabulary, Section 2.9. 'Industrial Robot', <https://www.iso.org/obp/ui/#iso:std:iso:8373:ed-2:v1:en> (방문일자: 2024. 09. 13.).

- 실제로, 입고, 생산, 조립, 검수, 출고까지 자동화 공정이 이뤄진 스마트공장이 등장함
- 산업용 로봇을 원자재 등의 입고부터 생산, 조립, 검수, 포장, 제품 출고까지 전 공정에서 활용하고 있음

○ 산업용 로봇이 화물하역용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세대상 기계장비 취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산업용 로봇을 원자재·부품 하역 등 물류에 활용하게 되면, 지게차나 기중기와 같은 기존의 기계장비를 대체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AGV(Automated Guided Vehicle)이나 직교 로봇이 지게차나 기중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들어올림 장치가 없어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끌어내기는 어려움
- 산업용 로봇은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취득은 증가함이 없이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취득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의 등장

○ 건설기계 생산 기업들은 굴착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등 무인화 중장비를 개발하여 시연하고 있음

- HD현대는 중간지주 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디지털건설플랫폼 및 건설자동화시스템 기술과 HD현대건설기계 등과 같은 건설기계 생산회사의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무인 건설기계를 개발 및 시연하고 있음¹³⁾
- 독일의 보막(Bomag)은 자동화 플랫폼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인화 롤러를 개발함
- 독일의 립헬(Liebherr)은 타워크레인 원격제어 기술을 개발하여¹⁴⁾, 타워크레인의 무인화 가능성을 열었음

○ 국토교통부도 무인화 기계장비의 등장 및 실제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공통공사표준시방서(KCS 10 00 00)를 개정하면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KCS 10 70 10) 부분에 무인화 기계장비를 활용한 시공·안전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시킴

13) 현대사이트솔루션, <https://www.hd-xitesolution.com/pr/news/365?page=1> (방문일자: 2024.09.09)

14) 립헬 홈페이지,
https://www.liebherr.com/en-usa/products/mobile-and-crawler-cranes/customer-magazine/simply-explained/remote-control.html?srsltid=AfmBOop-q_qR1DfCjyOuBBKHbxElOcPj8LSxgxXR9Hk22akDMdE_3r55, (방문일자: 2024.09.09.)

- 이러한 개정은 "마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및 마신컨트롤(Machine Control) 기술을 건설 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며,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임¹⁵⁾

○ 무인화 기계장비는 안전성, 생산성, 정확성,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향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위험한 작업에 사람이 투입될 필요가 없어 안전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음
- 사람이 기계장비를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되어 기계장비 가동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작업 연속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 작업의 균질도가 높고 재작업 발생률이 낮아져 시공 정확도가 높아짐
-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공사 기간의 단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는 케빈(조종석)이 없으므로, "자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자주식"인 것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임
 - 자주식(自走式)은 운전자 스스로 직접 운행한다는 의미임
 - 무인화 기계장비는 조종석이 없고 운전자 스스로 직접 기계장비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함
- 무인화 기계장비가 기존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대체할 가능성성이 큼
- 무인화 기계장비가 고가이고 아직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기계 장비를 단기간 내에 대체할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무인화 기계장비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고, 안전성·생산성·정확성·비용효율성의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무인화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임

15) 2023.1.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8호

04

과세범위 개편의 필요성 검토

○ 과세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현시점에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실과 법에서 정하는 과세범위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현재 발생한 현상을 넘어서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까지 포섭하는 조세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변화를 도모해볼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산업용 로봇, 무인화 기계장비는 기존의 기계장비와 비교해볼 때, 신기술 투자·고도의 기능성 면에서 고부가가치의 장비이고 상대적으로 소형이라는 특징이 있음
- 현재의 과세대상 기계장비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로봇, 무인화 기계장비는 이동성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므로 이동성의 특성은 변함없음
 - 상대적으로 소형이어서 이동성의 특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음
- 중장비 대비 소형의 기계장비를 수용하게 된다면, 현재의 과세대상 기계장비가 갖는 대형의 특성은 옮어질 것임
- 즉, 큰 틀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 설정 기준이 ① 이동성, ② 대형 기준에서 ① 이동성, ② 고부가가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임
- 신기술을 도입한 고가 장비의 재산적 가치 보호 및 과세대상 포착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함
 -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지만, 그 외의 기계장비는 등록의무가 없음
 - 현재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에 있어서 일부 기계장비의 미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상황에서 무인화 기계장비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하면 미등록 기계장비가 더 많아지게 됨

- 부동산은 고정성 및 등기제도로 인해 과세대상 포착이 쉽지만, 기계장비와 같은 동산은 납세자의 협력 없이 포착이 어려운 성질의 것¹⁶⁾이므로, 등기·등록제도의 수반은 과세에서도 중요함

○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산업용 로봇과 무인화 기계장비가 기존의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용 로봇이 기존의 기계장비를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은, 모든 로봇을 과세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닌,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일부 산업용 로봇이 있는지 선별하는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로봇은 기계장비와 별개의 개념이고 로봇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모든 로봇을 기계장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접근방식은 별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AGV나 직교로봇과 같이, 기계장비 요건을 일부 수정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산업용 로봇을 선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AGV의 경우, 공장 내에서 사실상 지게차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들어올림기능이 없어 지게차로 볼 수 없음
- 무인화 기계장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 중 "자주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기계장비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주식"의 요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인화 기계장비는 케빈(조종석)이 없어 자주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와 같이 "자주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함
- 현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자주식" 요건 수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16) 財団法人 資産評価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 「機械・装置等償却資産の保有状況等に関する調査研究」, 東京:財団法人 資産評価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 1998.3, p.21.

<참고문헌>

- 김태호, 「미등록 기계장비의 취득세신고누락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 60년사」 제2권 주제사,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財団法人 資産評価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 「機械・装置等償却資産の保有状況等に関する調査研究」, 東京 : 財団法人 資産評価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 1998.3.
-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export.do>)
- 국제표준화기구 (<https://www.iso.org/obp/ui/#iso:std:iso:8373:ed-2:v1:en>)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8호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179)
- 립헬(<https://www.liebherr.com/en-usa/products/mobile-and-crawler-cranes/customer-magazine/simply-explained/remote-control.html?>)
- 현대사이트솔루션 (<https://www.hd-xitesolution.com/pr/news/365?page=1>)